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69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문금주
김원이 · 차지호 · 임미애
조인철 · 박용갑 · 이춘석
조계원 · 허영 · 이용선
정준호 · 김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는 실정임.

특히 2014년, 2021년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 2023년에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10년간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등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 제49조의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나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근로강요행위의 금지)”를 “(지원 자금의 회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을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 (생략) <u><신설></u>	제24조(허가의 제한) ----- ----- ----- -----.
3. 임원 중에 <u>제1호나 제2호</u>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 2. (현행과 같음) 3.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u>제4호 또는 제6호</u>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 -- <u>제1호, 제2호, 제3호</u> ---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 ----- ----- ----- ----- ---. ----- <u>제4호</u> ----- -----.

1. ~ 5. (생략) 6. <u>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u> ② (생략) 제49조의2(<u>근로강요행위의 금지</u>) ① <u>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 된 경우</u>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u>지원 자금의 회수</u>) ① <u>「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 -----.</u> ② (현행과 같음)
---	--